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학 신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虞犯者)의 관리제도 현황	6
제1절 우범자의 의의 및 현황	6
1. 우범자(虞犯者)의 의의	6
2.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재범 현황	8
제2절 범죄경력자로서 우범자의 관리제도 실태	10
1.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10
가.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및 근거법령	10
나.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 및 유형	11
다.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정책	14
2.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제도	19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9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23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29
라.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 상 우범자 관리제도 ..33	
1) 우범자의 죄종별 현황	33
2) 우범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	35
3)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 상 우범자 관리제도	36

제3절 외국의 범죄경력자 관리 제도	40
1. 미국	40
가. 워싱턴 DC	41
나. 로스앤젤리스 경찰국(LAPD)	42
다. 리엔트리(Reentry)	43
2. 영국	45
가.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	45
나.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47
3. 프랑스	49
가. 성범죄자 관리제도	49
나. 조직범죄자(테러, 마약, 성매매 등)의 관리제도	50
4. 일본	51
5. 호주	53

제3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55

제1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55

1.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합헌의견	55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56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57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59
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60
마. 적법절차 위배 여부	61
2.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위헌의견	61
가. 인격권의 침해 여부	62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64
3. 소 결	65
제2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쟁점	66
1. 전자감시제도의 긍정론	67
2. 전자감시제도의 부정론	67
3. 전자발찌 관련 판례	68
가. 사실관계	68
나. 법원의 판단	69
4. 소 결	70
제3절 우범자 관리의 제도상 문제점	71
제4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76	
제1절 우범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76
제2절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운영방안	79
제3절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	80
제4절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81
제5절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82

제5장 결 론84

【 參考文獻 】87

< 표 목차 >

<표 1>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9
<표 2>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9
<표 3> 보호관찰 실시사건15
<표 4>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 대기자 현황23
<표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30
<표 6>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죄종별 현황35
<표 7>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36

< 그림 목차 >

<그림 1> 보호관찰 실시사건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2006년 7월 대구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으로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성(性)범죄경력자로 이전에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갓 출소한 뒤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같은 해 11월 전북 익산에서도 역시 교도소를 갓 출소한 범죄경력자들에 의하여 여(女) 약사가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2007년 3월에는 전과 23범의 범죄경력자에 의한 제주 서귀포 초등학교 납치 살인사건, 2007년 12월 경기 안양 초등학교 납치 살인사건은 전과 6범의 범죄경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후 2010년 최근에는 성폭행 전과자로 부산 여중생 성폭행·납치 살해범인 김길태 사건, 동년 6월 남편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범죄로 15년간 복역·출소 후, 초등학교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2010. 12월 출소한 성폭력 우범자가 6개월 뒤 2011. 6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청소년 강간을 저지른 사건¹⁾ 등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은 발생하고 있다.²⁾

이에 국민들은 평상시 경찰이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경력자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난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죄경력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미국처럼 재범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1) 서울신문, 「전자발찌 30대, 출소 6개월만에 또 성범죄」, 2011. 6. 19 일자.

2) 경찰청 「2010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발표에 따르면, 2010. 11월 말까지 발생한 범죄건수는 1,020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7.4%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현황은 2005년 10건, 2006년 12.6건, 2007년 14.7건, 2008년 16.9건으로 3년 사이 69%가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서울에서만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749건으로 2.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였다.

있다.³⁾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우범자(虞犯者)로 분류하여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첩보수집을 통한 재범방지를 하고 있지만, 이들 우범자들의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범죄행위로 이들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재범 위험이 높은 20대의 성범죄자가 본인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잠적했으며, 또 다른 범죄경력자(전과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교를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되었다.⁴⁾

이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니 이에 대한 재범예방의 필요성으로 2012년부터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자 법무부에서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⁵⁾

현행의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⁶⁾ 성폭행이나 살인

3) 2011. 5. 20 미국의 일리노이 주(州) 레이크 카운티 법원(Lake County Courts)이 성폭행 재범자에게 징역 120년형을 선고하였다. 본 사건은 갤러틴이란 사람이 2003년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스콘신(Wisconsin) 주(州)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0년 6월 가석방된지 한달이 되기전에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19세의 여성을 납치한 뒤, 현금(40달러)을 빼앗고 장소를 이동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www.suntimes.com, 2011. 5. 20일 방문.

4)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최근(2011. 1월 기준)까지 2년여 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은 모두 8건이며,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401명으로 이 중 살인범이 208명, 성폭력범은 193명이다. 경향신문, 「강도범도 ‘내년부터 전자발찌’ …법개정 추진」, 2011. 1. 20 일자.

5) 조선닷컴,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 개정 추진」, 2011. 1. 20 일자.

6)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부착을 통해 범죄의 적절한 예방 및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범죄예방 활동, 첩보수집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기본권 침해의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성범죄우범자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성범죄우범자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범죄경력자라는 사실만으로 우범자로 관리하고 판단하여, 이들을 개인정보 수집 및 동향을 관찰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⁷⁾

이하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 현황과 이에 대한 쟁점사항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히 높다고 한다. 포커스 신문, 「강도범도 전자발찌...재범률 월등히 높고 죄질 나빠」, 2011. 1. 21일자.

7)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이후 일반 강력범죄사범들이 경찰의 동향관찰 활동과 관련된 사생활의 침해, 전과사실 유출 등 인권침해 진정민원을 위원회에 간간히 제기하여 왔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경찰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첩보수집, 소재 파악 등 동향관찰 활동이 대폭 강화 확대되면서, 성범죄관련 우범자들의 인권침해 진정, 민원, 상담이 상당한 정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진정, 민원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소재파악 및 동향관찰 등 첩보수집 활동을 함에 있어 첫째, 정복을 착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공연히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공개성), 둘째, 우범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탐문한다는 점(직접성), 셋째,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대상자와 지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공개하는 경우 달리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넷째 대상자와 주변주민들에게 거주형태, 직업여부, 평소 생활태도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일정 부분 유출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상영,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와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52면.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범죄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불어 범죄자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흉폭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유독 재범률이 높다. 한 예로 강력범죄 수형자 중 재범자가 50% 이상이며, 전과횟수와 재범률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보호관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범죄경력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현재의 각종 범죄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해서 범죄 경력자들의 관리 실태와 경찰, 법무부,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범자들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범죄경력자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없는지, 또한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교정, 법원, 검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범죄경력자인 우범자(虞犯者)의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더불어 우범자 관리제도의 실태를 보호관찰, 아동 및 성범죄자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리제도와 더불어 외국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의 범죄경력자 관리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성(性)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과 위헌의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적법절차의 위배 여부, 인격권의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에 관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끝으로 우범자 관리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4장에는 위에서 분석한 다양한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범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우범자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부분을 언급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더불어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인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자료와 경찰청 내부문건 자료와 각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한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범자 관리 실태 및 외국의 실태를 분석하고, 더불어 법무부, 검찰·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 국가기관과 관련 민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형사법적 관련 논문 등 선행된 연구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무상의 사례는 경찰과 검찰기관의 수사 사례를 참조하고, 다양한 관련 유관기관의 인터넷 자료와 국회의 입법적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虞犯者)의 관리제도 현황

제1절 우범자(虞犯者)의 의의 및 현황

1. 우범자(虞犯者)의 의의

범죄경력자인 우범자(虞犯者)라 함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거나, 범죄(犯罪)를 저지를 우려(憂慮)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범(再犯), 누범(累犯), 상습범(常習犯), 전문 범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도 앞으로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에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범자 관리의 대상 범죄로는 조직폭력 범죄, 살인죄,⁸⁾ 방화죄,⁹⁾ 강도죄, 절도죄, 강제추행죄, 마약 범죄가 있다.

8) 1999. 1. 20 제1차 개정으로 살인죄(殺人罪)를 대상범죄에 추가하였다.

9) 2008. 12. 8 무동기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우범자 대상범죄에 방화죄를 추가하면서 동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동 규칙에 의한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인 「첩보수집 대상자」는 조직폭력배, 살인, 방화 복역자 및 여타 범죄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자는 3월 1회 이상 2년간 첩보수집을 하고, 후자인 「자료보관 대상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중 2년의 기간만료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더 이상 첩보수집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¹⁰⁾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시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출소에 대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1991년 7월 31일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이 제정되었다. 동 규칙은 강도·절도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면서 관찰보호자에 대해 전과 등을 토대로 갑·을종으로 구분, 관찰횟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갑종의 경우는 월1회, 을종의 경우는 3월 1회를 하였는데, 전자인 갑종은 범죄단체 조직원, 기타 조직을 이용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장물, 약취유인, 도박, 사기, 위조, 변조, 밀수,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2회 이상 받고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다.

후자인 을종의 경우는 심신장애, 마약류 중독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갑종 기간 경과 후 계속 관찰을 요하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전과자 및 출소 후 행방불명 또는 조사 누락 등으로 관찰보호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인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 갑종과 을종을 구분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우범자가 경찰이 자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10) 2010년 11. 30. 기준 우범자는 총 30,821명으로 이중 첩보수집대상자는 16,994명, 자료보관대상자는 12,590명 이었다.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 보관대상자 현황, 2010. 11. 30.

며 우범자 근거법령 및 취지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동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 동 규칙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전면 개정을 하였는데, 이때 갑종과 을종을 폐지하고, 우범자로 통칭하면서 판단근거가 불분명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던 심신장애자, 알코올 중독자 등을 폐지, 조직폭력배·상습전과자 등으로 한정, 일선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첩보제출 제도로 변경하였다.

2.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재범 현황

경찰청에서 발행한 「2010년 경찰백서」에 의한 범죄경력자인 재범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총 검거된 인원은 2,333,715명으로 이중 범죄경력자인 재범자가 1,109,859명으로 범죄자의 47.6%가 재범자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도 380,130명으로 16.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법범의 경우는 총 검거된 인원이 1,164,800명 중 재범자가 534,652명이고, 특별법범은 총 검거된 인원이 1,168,915명 중 재범자가 575,207명으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2009) (단위 : 명)

구분	총검거인원	재범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2,333,715	1,109,859	380,130	729,729
형법범	1,164,800	534,652	173,523	361,129
특별법범	1,168,915	575,207	206,607	368,600

※ 총 검거인원은 법인 제외 수치임.

다음으로 중요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절도죄, 폭력죄에 대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검거 인원인 597,788명 중에서 재범자는 318,467명으로 중요 범죄에서의 재범률이 53.3%나 되었다.

<표 2>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97,788	1,515	8,553	9,215	1,676	126,084	450,745
재범자	318,467	947	5,538	4,417	1,101	63,045	243,419
구성비 (%)	53.3%	62.5%	64.7%	47.9%	65.7%	50.0%	54.0%

※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재범을 합한 수치임.

강간죄(47.9%) 외에는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죄의 경우 총 1,515명 중 947명이 재범자로서 62.5%나 차지하였고, 강도죄의 경우 총 8,553명 중 5,538명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총 9,215명 중 4,417명으로 47.9%, 방화죄의 경우 총 1,676명 중 1,101명으로 65.7%, 절도죄의 경우 126,084명 중 63,045명으로 50%, 폭력죄의 경우 450,745명 중 243,419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죄는 62.5%, 강도죄는 64.7%, 방화죄 65.7%를 차지하여 강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50%이상의 재범률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범 교화 프로그램의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절 범죄경력자로서 우범자의 관리제도 실태

1.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가.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및 근거법령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라 함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保護觀察), 사회봉사(社會奉仕),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 보스턴(Boston)의 독지가인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인수하여 개선·갱생시킨 것이 효시로 1878년 메사추세츠 주(州)에서 세계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제도의 기본골격을 제공하였으며, 1927년까지 1개 주(州)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가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이 보호관찰법을 입법화한 이래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프랑스(1958)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보호국에서 1982년에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연구반을 편성하여 일부 가석방자(假釋放者)에 대하여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그 후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1989. 7. 1. 소년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을 실시 할 보호관찰소를 개칭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나.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 및 유형

보호관찰의 대상자에 관하여는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보호관찰 대상자” 라고 지칭하는데,

그 대상자는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인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유형으로는 보호관찰(保護觀察), 사회봉사명령(社會奉仕命令), 수강명령(受講命令), 선도위탁(先導委託), 성구매자교육, 전자감시제도(電子監視制度)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보호관찰(保護觀察)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경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등이다. 보호관찰에는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둘째로 사회봉사명령(社會奉仕命令)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

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구금형(拘禁刑)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사회내 처우의 한 방안이다.¹¹⁾ 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내려지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500시간 이내이다. 사회봉사 집행분야로는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다.

셋째로 수강명령(受講命令)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命)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역할극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이다.

이러한 수강명령의 주된 교육내용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 알콜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 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이 있다. 또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 훈련 등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도 있다.

넷째, 선도위탁(先導委託)은 범죄동기, 범죄자 연령, 제반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전

11) 이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적인 선도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성(性)구매자 교육은 검사가 초범인 성구매자를 기소유예하면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소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섯째, 전자감독제도(電子監視制度)는 전자장치, 위성수신정보(GPS; Global Positioning System)¹²⁾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24시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정보를 활용한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및 정책¹³⁾

우리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법’의 시행으로 처음 도입이 되어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 처우로의 기능과 우리 형사정책의 중심제도로 성장하였다.

초창기인 1989년도에 8,389명에 지나지 않았던 보호관찰대상자는 1997년 「형법」 개정 후 성인범에 대한 확대 실시로 그 대상이 100,988명으로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184,81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한 바 있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동안 보호관찰이 약 2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인범에게까지 전면 확대된 데 이어 가정폭력사건, 청소년 성폭력사범 등으로 대상

12) 인공위성 자동위치측정 시스템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해 실용화했다. 이 시스템은 지구궤도 20200km 상공에 올려진 총 24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어느 지점이든 최소 4개의 위성이 24시간 관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간편한 장비로 정확한 위치 측정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민간차원에서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의 항법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13)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성과와 미래 비전」, 2009년 8월 31일, 보도자료 참고.

자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년 전에 비하여 4-5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은 직원 1인당 30 ~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의 3배에 가까운 158명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뿐만 아니라 예산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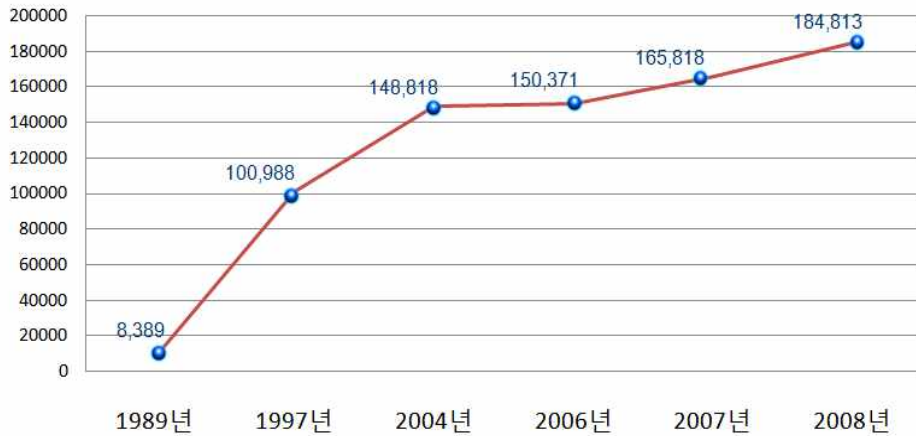
<표 3> 보호관찰 실시사건

(단위 : 건)

구 분	실 시 종 류					
	계	보호 관찰	사회 봉사	수강 명령	선도 위탁	성 구매자 교육
1989년	8,389	7,971	121	297	-	-
1997년	100,988	65,081	30,551	2,606	2,750	-
2004년	148,818	85,042	45,252	15,384	3,140	-
2006년	150,371	83,498	35,886	13,783	3,749	13,455
2007년	165,818	84,478	42,190	16,293	4,073	18,784
2008년	184,813	88,260	47,654	22,083	5,014	21,802

<그림 1> 보호관찰 실시사건

(단위 : 건)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의 정책적인 제도로 외출제한명령(外出制限命令), 집행 등 IT기술을 활용한 감독과 집중보호관찰제도,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운영 등 선진감독기법을 개발해 시행한 결과, 2004년 8.1%이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2009년 7월말 기준 5.2%까지 낮추어 재범방지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는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제도, 재범위험군 전담팀 운영,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전문적인 조사업무 수행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는 2001년 2월 임시퇴원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시범실시 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2003년 9월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초기의 개입을 강화하고, 현지로 출장하여 대면접촉의 횟수를 확대하는 등 집중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¹⁴⁾ 이후 2006년 보호관찰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집중

14)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는 △소재불명으로 추적을 받고 있는 자 △가출소 대상자 중 무위도식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코자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자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

보호관찰대상자 월 4회 이상 대면접촉 및 2회 이상 생활현장 면담 등 감독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외출제한명령제도는 주로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절도, 폭주족 등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3 ~ 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행하여진다.

이 외출제한명령제도는 2005년 3월부터 도입되어,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가 집행을 하는데,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으면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해 집에 머물러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대상자의 음성을 등록한 후 전화성문 분석을 통해 재택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8월 13개소 보호관찰소에 전담팀을 설치한 뒤 전국 19개 보호관찰소로 확대되어 전담팀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집중감독 등 고위험대상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있다.¹⁵⁾

넷째,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 대한 24시간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발찌는 현재(2009. 8. 31 기준)까지 643명에게 부착

를 중퇴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잡은 폭음, 가족에 대한 폭언·폭력행사, 취업거부 등 가족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주요 보호관찰 대상자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이다.

15) 2009. 7. 31 기준 전체 보호관찰 인원 5만 2천 369명중, 재범 고위험군은 8천 9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 그 중 1명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데 불과하여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섯째, 전문적인 조사업무 수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가족사항, 생활환경, 성장과정, 정신 및 신체 상태,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범죄인의 개별 처우에 대한 자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2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인 형사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¹⁶⁾

- 16)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의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우범장소 출입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전에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지 못했던 성인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외출제한 등 다양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사항’ 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선행 유지” 등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를 모든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동 법률의 개정으로 범죄의 내용과 종류,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차별화, 개별화된 준수사항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의 범정화(동법 제32조제3항)로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때에 일반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①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②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성매수 행위를 반복한 대상자에게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출입금지 부과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학교·유치원 등에 대한 출입금지 부과
 - ③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부과
 - ④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부과
 - 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주거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거주장소를 제한하는 명령 부과
 - ⑥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 범죄자에게 동종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 부과
 - ⑦ 단주 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알코올 의존증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에게 명령 부과
 - ⑧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동법 제33조의2에서 분류처우 실시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2.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제도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 제도】

이 법률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再社會化)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電子裝置)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범죄라 함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와 살인죄를 말한다.¹⁷⁾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¹⁸⁾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

취지로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분류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처우의 필요성과 상당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주요·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는 월 4회 이상 대면하여 접촉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자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대면접촉 등 강도 높은 지도·감독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제도 신설로 법 개정전까지는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나 가석방의 취소 이외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른 다양한 제재조치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준수사항의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여 중간적 제재조치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재범 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꼼작마! -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단주 및 알코올 치료 교육, 마약검사 명령 받는다.” 2009년 11월 28일.

17) 최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강도범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많고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을 범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신문, 「전자발찌 강도범에도 부착」, 2011. 1. 24 일자.

18) 2010. 4. 15 제10257호 일부개정 되어 동년 7.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형사정책(刑事政策)적 요구와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절감(費用節減)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현대 과학을 감시·감독 체계에 응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동법에서는 법정형(法定刑)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고, 동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¹⁹⁾ 성폭력범죄 외에 살인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아래와 같다.²⁰⁾

과거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성폭력 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治療監護), 보호감호(保護監護)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 가출소(假出所), 가종료, 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²²⁾

19) 울산지방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 이는 2010년 7월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첫 소급명령」, 2011. 1. 24 일자.

20) 법무부,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형 확정된 성폭력범에게 소급적용, 살인범도 부착가능」, 2010년 3월 31일, 보도자료 참고.

21)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2010. 10. 30 기준으로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으로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동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작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작명령의 청구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최근 4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의 동종재범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징역형 종료 후 및 집행유예 대상자 61명, 가석방자 393명, 보호감호 가출소 및 치료감호 가종료 대상자 45명 등 총 499명).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고연령자(高年齡者)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부착기간 상향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

22) 소급적용 절차

- 성폭력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작명령을 결정
- 이미 출소하였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작명령을 결정

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²³⁾

또 다른 개정내용은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로 종전 법률은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 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어,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동법 제9조의 2에서는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하였는데,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였다.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의 2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등을 규정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

23)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23조에서는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로 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경우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4>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 대기자 현황 (2010. 3. 현재)

구 분	피보호감호자 (청송제3교도소)	보호감호 대기자
성폭력 범죄	34	42
살인	0	11
계	34	53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1)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²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24) 2009. 6. 29 전부개정, 2010. 4. 15 일부개정, 2010. 7. 23 법률 제10391호 일부개정 됨.

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히, 동법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취업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²⁵⁾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아동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25)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상공개의 등록제도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동법 제34조 참조)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동법 제33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며,²⁶⁾ 이후 이를 등록하고,²⁷⁾ 관리해야 한다.²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2010년 3월 15일 개정)에는 인터넷 신상정보 등록·인터넷 열람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열람방법 및 절차, 공개정보 유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

26) 그 내용은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및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다(동법 제34조 제1항).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동항 단서). 또한 등록대상자는 이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동법 제34조 제2항 본문)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7)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의해 확보된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되고(동법 제34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게 된다(동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동법 제35조 제3항),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동조 제4항).

28)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동법 제35조 제1항), 이 등록기간이 끝나면 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동항 단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3항).

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성인자이면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법원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일정한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본문).²⁹⁾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다.

29) 이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및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다(동법 제38조 제3항).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8조 제4항, 제6항).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기간과 일치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본문). 다만 공개기간은 ‘형실효법’ 제7조³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하나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

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38조 제5항). 열람을 위한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6항).

3)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법원은 일정한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이 정한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

30)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하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³¹⁾

고지대상자는 등록대상자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동법 제38조의2 제1항 각호).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즉,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등이다(동법 제38조의2 제3항).

고지명령의 집행은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리고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38조의2 제2항).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동법 제38조의3 제1항).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31) 공개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즉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3)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동항 단서). 이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동법 제38조의2 제4항).

송부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38조의3 제4항).

이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및 고지명령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의3 제5항).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6항).

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1) 취업제한 대상기관

성(性)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은 동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44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이 있다.

<표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 류	교육시설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보육시설 아동시설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문화시설 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문화의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

	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기타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는 성(性)범죄경력조회 확인 의무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취업제한제도의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한다.³²⁾

그리고 동법 제44조 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은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법제처는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³³⁾

32) 2006. 6. 30 ~ 2008. 2. 3 사이는 5년, 2008. 2. 4. 이후는 10년 이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로는 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간음 등 성폭력의 죄, ② 아동·청소년 대상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 수집·운반·전시·상영, ③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음란물 제작대상이 되도록 매매한 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⑤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죄, 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건물 등 제공, 고용한 죄가 있다.

3) 취업제한제도 위반시 조치

이 취업제한제도의 위반시 조치로는 첫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과태료 부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

33) 법제처,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2010년 2월 3일, 보도자료.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 상 우범자 관리제도

1) 우범자의 죄종별 현황

경찰은 2010. 3 성폭력전과자 가운데 아동대상 1회,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범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 우범자’로 편입시키고, 또한 1990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과거 20년간 실형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재심사하여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기준으로 성폭력 우범자는 1만4772명으로 2000여명이 더 늘었다.³⁴⁾

경찰의 동향관찰 첩보수집의 방법도 성범죄 우범자의 경우, 1개월에 1회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3개월 1회 동향을 파악하는 첩보수집대상자, 성범죄 발생시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 대상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열람·선고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

34) 정상영,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와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50-51면.

의 경우, 열람권자에게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 성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 정보 변경사항을 발생 시 30일내 관할경찰서로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비하여, 위 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하고, 가급은 10년간 1개월 마다, 나급은 5년간 2개월 마다, 다급은 3년간 3개월 마다 관할 지역 경찰이 각각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³⁵⁾

최근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최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³⁶⁾

우선 최종별로는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도, 조직폭력, 강제추행, 마약류 사범으로 나누고, 이를 중점관리(1,237명), 첩보수집(16,994명), 자료보관(12,590명)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총 30,821명을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별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강간죄에 대한 우범자가 13,730명으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경찰이 지속적으로 강간죄에 대한 우범자 관리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최종별 현황 (단위: 명)

35) 정상영, 위의 글, 51면.

36)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최종별·관서별 현황」, 2010. 11. 30 기준.

구 분 죄종별	계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30,821	1,237	16,994
살 인	322	-	205	117
방 화	56	-	32	24
강 간	13,730	1,068	5,937	6,725
절 도	5,158	-	2,669	2,489
강 도	1,045	-	426	619
조직(성) 폭력	6,487	-	5,620	867
강 제 추 행	1,559	169	681	709
마약류 사범	2,464	-	1,424	1,040

※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죄종별 현황, 2010. 11. 30 기준.

2) 우범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

다음으로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³⁷⁾ 지방경찰청 현황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30,82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경기청이 6,528명으로 서울청의 5,620명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어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우범자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로 부산청 2,885명, 전북청 1,844명, 인천청 1,8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지방경찰청별 현황 (단위: 명)

37)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죄종별·관서별 현황」, 2010. 11. 30 기준.

구 분 관서별	계	중점 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
계	30,821	1,237	16,994	12,590
서울청	5,620	152	2,160	3,308
부산청	2,885	33	1,315	1,537
대구청	1,262	54	925	283
인천청	1,821	21	1,010	790
울산청	722	24	531	167
경기청	6,528	415	3,453	2,660
강원청	1,188	30	790	368
충북청	833	37	553	243
충남청	1,253	25	747	481
대전청	826	42	495	289
전북청	1,844	76	1,180	588
전남청	1,532	133	817	582
광주청	903	30	645	228
경북청	1,431	87	968	376
경남청	1,656	70	1,076	510
제주청	517	8	329	180

※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관서별 현황, 2010. 11. 30 기준.

3)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상 우범자 관리제도

경찰청 예규인 현행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상 우범자 관리제도로는 첫째, 우범자의 편입으로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³⁸⁾ 우범자 심사

38) 별지 제1호의 서식이란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를 가리킨다.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1) 회의의 일시·장소, 2) 심사대상자, 3) 심사대상자의 주민번호, 4) 출소기관, 5) 출소일시, 6) 죄명, 7) 주거, 8) 직업, 9) 직장주소, 10) 결혼 여부,

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으로 심사위원회는 3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의 형사 또는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우범자 편입 및 이전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계속 첩보 수집 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기간의 연장, 자료보관 대상자로 변경, 삭제에 대한 결정을 그 임무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결정내용을 신속히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범자 첩보 수집 규칙」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위의 「우범자 심사 기준 및 의결서」에는 우범자로서의 ‘우범(虞犯)성향’을 나타내거나 짐작케 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당해 사건과 관련된 복역의 경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요약조차 없어서 ‘막연히 전과 사실에만 의존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된다.³⁹⁾

또한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신규 우범자의 책정은 “교정기관으로부터 출소 통보를 받는 즉시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현거(現居) 여부 등의 기초 조사를 거쳐 그 때마다 신속히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대·내외 심리전문가의 참여를 필수로 하고 대상자의 정신장애 혹은 병력의 의심이 있는 경우 정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한다.⁴⁰⁾

11) 수감당시 상황, 12) 전과관계, 13) 의결사항, 14) 회의의 참석대상자, 참석자 및 불참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9) 김성문,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7면.

셋째, 첩보수집으로 경찰서장이 수사 또는 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구대의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의 경우는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첩보는 통상의 범죄첩보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특히, 자료보관 대상자의 경우는 “우범자의 성벽이나 환경 등에 관한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전과기록만을 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관찰결과도 임의적 관찰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⁴¹⁾

「우범자 첩보 수집 규칙」은 “첩보를 수집함에 있어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미만이 부여”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⁴²⁾

넷째,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소재불명자의 처리로 2009년 9월말 현재 소재불명 우범자는 4,899명(첩보수집 대상자 3,483명, 자료보관대상자 1,416명)으로 전체 우범자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⁴³⁾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 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우범자로 편입된 자가 소재가 불명일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주소지 등에 대한 소재확인을 거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행방불명자로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재불명인 우범자가 발견된 경우, 즉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

40) 김성문, 앞의 글, 19-20면.

41) 김성문, 앞의 글, 22면.

42) 권해수·김재봉, 「효율적인 범죄경력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우범자관찰보호를 중심으로)」, 치안연구소, 1998, 27면.

43) 경찰청 형사과, 「우범자 관리대책 개선방안」, 2009. 10. 1, 2면.

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소재불명 우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하고, 거주지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재불명자가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범자 첩보 수집 규칙」은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매분기별 관할 내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범자로 편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카드를 작성, 경찰서 우범자 담당자가 전산입력 후 보관하여야 한다.⁴⁴⁾

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⁴⁵⁾ 주거지가 불확실한 우범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등재지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관내에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우범자 여부를 조회하여 우범자일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우범자 전산 입력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⁴⁶⁾에 입력하는 방식으

44) 별지 제2호의 서식인 ‘우범자 전산입력카드’에는, 1) 입력관서, 2) 성명, 3) 주민번호, 4) 별명, 5) 사진, 6) 행불여부, 7) 관리죄명, 8) 편입일, 9) 출소기관, 10) 출소일, 11) 출소시 죄명, 12) 지문번호, 13) 직업, 14) 등급, 15) 외국인 상대, 16) 혈액형, 17) 우범자 책정사유, 18) 전과관계, 19) 본적, 20) 주소, 21) 실제 거주지, 22) 작성일자, 23) 작성자, 그리고 24) 확인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5)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상으로는 지서, 파출소에서는 관찰보호 대상자명단을 관찰기본대장에 등재하고, 관찰보호상황은 근무일지에 기재하였다. 당시에는 수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관찰자료의 관서관, 지역간 연계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권해수·김재봉, 앞의 글, 28면.

46)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수사지식정보·사건관리·범죄통계·전자지도·One-Call검색·신원종합검색 등이 통합·연계된 시스템”으로,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 및 범죄분석 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경찰들 사이에 다양한 수사지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 능력의 극대화”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상세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

로 진행되는데, 위의 ‘우범자 전산입력카드’의 내용에 의하면, “재범의 우려성을 판단하는 ‘우범자 선정사유’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수사관 개인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있다.⁴⁷⁾

우범자가 사망한 경우 삭제된 때에는 전산입력카드를 폐기하나, 우범자가 전출하거나 사망 이외의 사유로 삭제 결정된 자는 당해 카드에 그 일자와 사유를 명기하여 별도 보관한다.

종래의 ‘우범자 관찰보호규칙’ 제6조는 우범자가 사망 또는 전출하거나 보호관찰기간 경과자로서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보호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삭제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삭제 이후 재범을 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를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이에 반하여, 현행 규정은 별도 보관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제3절 외국의 범죄경력자 관리 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수단은 형사사건의 판결시 또는 가석방시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특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사」, 2009. 12, 95면 이하.

47) 김성문, 앞의 글, 20면.

48) 권해수·김재봉, 앞의 글, 29면.

다음은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찰과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에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관리제도와 리엔트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가.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 경찰을 중심으로 우범자(Repeated Offender)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워싱턴 DC 경찰은 우범자의 동향 관찰은 하지 않으며,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CSOSA(Court Services & Offender Supervision Agency)라고 하는 독립된 연방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업무협조를 받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고, 더불어 인권의 침해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CSOSA는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를 관리하며, 여타지역에서의 보호관찰(Probation) 관련 규정은 주(州)법에 규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워싱턴 DC 경찰은 전과자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으로부터 형집행 만료자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감독, 관리하는 업무는 주로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는 각 주(州)마다 다르다. 주(州)내의 광역자치단체(County) 정부의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 또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다.

더불어 보호관찰관 또는 지정된 감독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와 면담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인과 접촉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며 경찰에게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⁴⁹⁾

나.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

미국 로스엔젤리스 경찰국(LAPD)의 경우 살인, 강도 등 중범죄를 범한 죄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기를 마친 후에는 범죄 관련 자료의 관리, 재범자에 관한 첩보수집 등 재범자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성관련 범죄(Sexual Offenses)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인 형법, 메간법(Megan's Law) 등에 따라 수감시설로부터 석방된 경우 거주지 등을 지역경찰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만약 위반시에는 처벌하고 있다.⁵⁰⁾

여기서 메간법(Megan's Law)이란 1994년 미국의 뉴저지(New Jersey) 주(州)에서 메간 칸카(Megan Kanka)라는 7살 난 소녀가 2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한 이웃 남자에 의해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성범죄자등록및통지에관한 법률(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Law)’ 이 효시가 된 것으로, 각 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 와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 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들을 가리킨다.⁵¹⁾

또 다른 범죄경력자의 관리 제도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 인터넷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의 범위인데, 전형적인 것은 성명, 사진, 신체특징, 생년월일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 주소 등을 탑재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주(州)에서는 주소를

49) 경찰청, 「미국의 우범자관리 실태 자료(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2010. 5.

50) <http://www.lapdonline.org/>, America LAPD homepage(2011. 5. 30 방문).

51) 현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54면.

대신하여 우편번호(zip code)만을 기재하기도 한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로 대상자를 고용한 사람,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등록번호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⁵²⁾

다. 리엔트리(Reentry)

리엔트리(Reentry)는 미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전 과정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Reentry란 용어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범죄자의 효과적인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리엔트리(Reentry)의 목적은 양형단계, 시설내 관리단계, 사회내 관리단계의 각 과정이 상호 유기적이고 연속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고 사회복귀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리엔트리(Reentry)의 내용은 연방과 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Reentry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범죄자관리 절차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미국 법무부 연방교정국에 국립교정연구소(NI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에서 제시한 TPCI Model 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52)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2007, p.54.

53)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2002; 정진수,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국회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108면.(<http://nicic.gov/> 2011. 5. 2 방문).

연방 교정시스템에서는 3단계에 걸쳐 Reentry가 진행된다. 즉 이 절차는 범죄자가 교도소에 입소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이후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출소전 180일간의 중간처우시설 거주단계, 그리고 출소 후 3-5년간의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단계로 구분된다. 연방교정국(BOP)은 교정시설단계와 중간처우시설단계에서의 Reentry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교정시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Reentry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위험성 및 욕구가 평가되고 분류되며, 이에 따라 교도작업, 교육, 직업훈련, 마약치료 등 범죄자의 재화를 돕는 내용이 실시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취업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중간처우시설단계에서는 교정시설단계에서의 취업능력향상에 따른 취업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약물이나 알콜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된다.⁵⁴⁾

연방보호관찰청(U.S. Probation Offices)은 지역사회내 감독단계에서의 Reentry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이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출소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관리계획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약물치료와 정신건강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⁵⁵⁾

미국에는 각 주(州)마다 다양한 형태의 Reentry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것은 없다. 여기서는 오하이오 주(州)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하이오 주는 양형과 입소단계, 교정시설단계, 지역사회감독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양형 및 입소단계는 범죄자의 Reentry 진입단계로서 재범위험성과 욕구에 대한 사정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배정 및 교정서비스가 설계된다. 교정시설단계는 교정시설 Reentry 관리팀과 전환 Reentry 관리팀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교정시설 관리팀은 사례관리실

54)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66T Reintegration of Offenders Into Communities, 2001, p.4.

55)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1, pp.4-5; 정진수, 앞의 글, 110면, 재인용.

계, 프로그램 배정 및 운영감독, Reentry 수정을 담당한다. 전환 관리 팀은 출소준비, 가석방위원회 접촉, 지역사회후원자 접촉, 구직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감독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주축이 된 사회내감독 Reentry 관리팀이 범죄자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적절한 프로그램 배정 및 운영감독, Reentry 수정을 담당한다. 물론 각 단계별 재범위험성 및 욕구사정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은 모두 공유된다.⁵⁶⁾

2. 영국

가.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

영국에서는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자관리와 재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하였다. NOMS의 설치에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조치로서, 범죄자가 교도소의 시설내에 있던, 아니면 출소하여 사회내에 있던 간에 끊이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교정과 보호의 정책 및 집행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범죄자를 관리(Offender Management) 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즉 범죄자관리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을 만들어 범죄자 관리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범죄자관리를 전담하는 범죄자관리자(Offender Manager)를 지정하였다. 범죄자관리자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의 범죄자 관리를 일관성있게 실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범죄자관리의 최종목표는 출

56) Ohio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 The Ohio Plan For Productive Offender Reentry and Recidivism Reduction, 2002, 3-4면; 정진수, 앞의 글, 110면, 재인용.

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간의 직역을 없애고, 위험성평가와 정보공유, 일관성있는 처우의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⁵⁷⁾

범죄자관리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관리의 전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영국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OASys (Offender Assessment System)가 있다. OASys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가장 진보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OASys는 13가지의 범죄관련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OASys의 평가결과는 교도소에 수용중이거나 사회내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기간 내내 활용되며 점수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거나 재검토 된다. OASys는 법원에 대해 판단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설내 또는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NOMS의 범죄자관리는 형을 집행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며,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범죄자관리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⁵⁸⁾ 첫째, 한 사람의 범죄자관리자(Offender manager)가 범죄자에 대하여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책임을 진다. 둘째, 시설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를 포함하여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하나의 관리계획(sentence plan)이 있어야 한다. 셋째, 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자원(resource)이 분배되어야 한다. 넷째, 범죄자가 구금중이거나 사회내에 있거나를 묻지 않고 범죄자관리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지역별로 범죄자관리를 책임지는 범죄자관리자

57) 정진수, 위의 글, 103면.

58) NOMS, Offender Management A brief guide for probation staff, 4면; 정진수, 위의 글, 104면 재인용.

(offender manager)가 지정되어 있다. 범죄자관리자의 업무는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출소 후 사회에서 범죄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범죄자관리자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도소에 상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중 범죄자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Offender Supervisor)를 두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범죄자를 4가지의 급수로 분류하고 있다. 급수는 각 범죄자의 형기와 재범위험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정하여 진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경우를 4급(Tier 4)으로 하고, 가장 단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1급(Tier 1)으로 하였다. 각 급수별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⁵⁹⁾

나.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영국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내에 있는 고위험범죄자의 관리를 위하여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체계를 활용,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고위험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MAPPA는 법적 기구(statutory body)는 아니고, 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에서는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59) NOMS, Offender Management A brief guide for probation staff, 4면; 정진수, 앞의 글, 104-105면 재인용.

소, 교도소가 각 지역의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 RA)으로서 서로 공식적인 협정(Arrangement)을 맺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의해 MAPPA 지침(MAPPA Guidance)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MAPPA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MAPPA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 같은 형사사법 기관이며 이들을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이라 한다. 그리고 책임기관 외에 지역내의 각종 기관이 협력기관(Duty to Co-operate Agency, DTC)으로서 참여한다.⁶⁰⁾⁶¹⁾

60) 협력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기관(Local Authority Social Care Service), 의료기관 및 정신 보건기관(Primary Care Trust, other National Health Service Trusts and Strategic Health Authority), 직업훈련소(Jobcentre Plus), 등록된 임대주택기관(Registered Social Landlords), 지역주택기관(Local Housing Authority),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 Authority), 전자감시요원(Electronic Monitoring Provider) 등이 있다. 정진수, 앞의 글, 106면.

61) MAPPA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고위험범죄자는 약 13,000명이며, 그 중 약 1,500명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범죄자로 보고 있다. 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범죄자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2005/2006년도 MAPPA 관리대상자 현황을 보면, 가장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1단계의 경우 23,870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수준인 2단계의 경우 12,505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고위험범죄자군인 3단계의 경우 1,278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의 단계는 위험성의 정도에 의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1단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보호관찰소, 경찰 또는 청소년보호팀)이 범죄자관리를 맡는다. 2단계와 3단계에 속하게 되면 두 개이상의 기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단계가 높을수록 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MAPPA는 보호관찰관할구역마다 설치되어 있고 출소예정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의 방법과 처우계획을 협의한다. 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범죄자는 주의 깊은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 부정기적인 가정방문과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야간통행금지나 특정장소에서의 거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 위험한 성범죄자도 MAPPA의 대상자가 되는데, 이들은 밀착감시되고 특정 장소(예컨대 학교)에의 출입금지, 적극적 감독(active surveillance), 전자감독, 승인된 거주장소(Approved Premises)에서의 거주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경찰과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범죄자 정보공유를 위하여 ViSOR(Violent and Sex Offenders Register)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간에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유의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규칙이 만들어져 있다. 정진수, 앞의 글, 106-107면.

3.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의 ‘우범자’ 즉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관리제도는 없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와 조직범죄, 테러, 마약, 성매매, 예술품의 불법거래, 불법이민, 통화위조, 돈세탁 등에 대한 조직범죄자 관리제도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위 성범죄자의 관리제도와 조직범죄자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범죄자 관리제도

먼저 성범자의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이미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았거나 혐의를 받은 자의 상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성범죄자 자동화된 사법적 국립전산시스템(FIJAISV;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4. 3. 9일자로 법률 배르뱅 II(Loi Perben II)의 제 48조를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형사소송법 제706-53-1조 및 그 이하 제R53-8-1조 및 그 이하의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⁶²⁾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상 범죄로는 강간, 고문 또는 야만적 행위에 의한 미성년자 및 성년자의 살인, 강간, 성폭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법

62)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원이 관리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관리된다.

그리고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내용은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별명, 일정한 경우에 가족사항, 주소지, 시스템에 등재되는 계기가 된 사법적 결정으로 그 내용은 범죄종류, 재판일자 및 종류, 과형, 재판당국, 사건 일시 및 장소이다.

이러한 성범죄자 전산시스템(FIJAISV)의 관리방법으로는 우선 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를 연 1회 또는 6월 1회 또는 심한 경우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해야하며, 이주를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2년의 징역 및 3만 유로(한화 4천2백여만원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성범죄자는 교도소 출감시부터 감시토록 하고 있다.

이 전산시스템(FIJAISV)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는 사법당국, 특별 자격을 보유한 사법경찰관, 도지사 및 미성년자 관련 업무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⁶³⁾

나. 조직범죄자(테러, 마약, 성매매 등)의 관리제도

다음으로 조직범죄자에 대한 관리체도로 여기에는 범죄조직, 테러, 마약, 성매매, 예술품의 불법거래, 불법이민, 통화위조, 자금세탁 등과 같은 조직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1년 전산시스템을 창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수대 전산시스템(FBS ; Fichier des Brigades Spécialisées)’ 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는 제도이다. 이 시스

63) 2008년 말까지 약 4만4천여명의 성범죄자가 등재되었다.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템은 특수한 성격의 범죄자의 활동 습관 및 범죄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를 관련 업무담당 경찰관들이 열람토록하여 범죄자 관리에 관해 상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조직범죄자를 관리하는 특수대 전산시스템(FBS)의 관리 방법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중에 습득된 모든 정보를 등재하며, 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기한만큼 보존할 수 있고, 현재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대형사건 및 조직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행정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⁶⁴⁾

4. 일본

일본에서의 우범자 관리는 일본 경찰청과 법무성이 정보를 확실히 공유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법무성은 아동대상 폭력적 성(性)범죄 전과자, 소재가 불분명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 집행유예자 등에 의한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정보공유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미연에 조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동종(同種)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대상의 폭력적인 성(性)범죄에 대한 출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05. 6월부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에 의해 형사시설에 복역한 자를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귀주예정처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 공유의 시작부

64) 2007년 말까지 약 19만여건의 정보가 기록되었으며, 2007년 한해 동안 약 11만여 회의 조회가 이루어졌다.

터 2008년 말까지 556명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출소자의 갱생이나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신속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흉악하고 강력한 중대 범죄 등에 관한 출소정보의 공유이다. 경찰에서는 2005. 9월부터 흉악 중대범죄 특히, 강도 등의 흉악 중대범죄 및 연계가능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침입강도, 약물범죄 등에 의한 교도소 복역 후 출소자에 또는 출소예정자의 입소죄명, 출소 연월일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서 법무성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는 운용한 개시일로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2,000명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현재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은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고 색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 중 소재가 불명된 자와의 정보 공유이다. 이는 소재가 불명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장에 대해서 2005. 12월부터 보호 관찰소로부터의 협력, 의뢰하여 경찰이 그 소재불명자 소재수사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소재불명자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경우에 해당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2008년 말까지 경찰이 파악한 1,568건의 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당해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1,319명의 소재를 확인하였다.⁶⁵⁾

일본의 우범자 관리에 있어 법적인 근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법무성에서 의뢰시 정보공유만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국장 통달방식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국장 통달 제 5-1의 근거에 의해 출소 후 소재확인 은 대략 출소 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행하고 있다.

우범자의 지속적인 소재의 확인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복수의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나 출소 후 아동대상에게 말을 걸거

65)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

나 따라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 등 특이한 재범방지 조치대상자에 대해 빈번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확인 은 원칙적으로 재범방지 담당관 또는 재범방지조치 실시 보조자가 스스로 실시하며, 표찰 등의 외형적인 상황으로부터 주거(住居)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주거의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시간을 두고 다시 소재확인을 행하며 여러번의 소재확인 에 있어서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로서 조치를 한다. 이처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소재확인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자료에 기재하고 경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⁶⁶⁾

5. 호주

호주의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주(州) 경찰은 2002년부터 Suspect Targeting Management Plan II라는 우범자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우범자 관리 법률 등 법적 근거로는 ‘권한과 책임의 경찰 집행법(Law Enforcement Power & Responsibility Act, 2002)으로 이 법률은 우범자 관리만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아니고, 여기에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 부분에 우범자 관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권한과 책임의 경찰 집행법(Law Enforcement Power & Responsibility Act, 2002)’ 상 우범자 관리 방법으로는 첫째, 우범자의 대상을 식별하는 것으로 먼저 지역내의 우범자를 알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 즉 우범자

66)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

로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위험성 평가로 범죄환경 측정과 개인의 기질 측정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우범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서열화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형사 다중시스템에 기록, 보관하며 지역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우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⁶⁷⁾

67) 주 호주대사관, 「호주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제3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제1절 성(性)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쟁 점과 기본권 침해 여부

범죄경력자 중 성(性)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⁶⁸⁾에 대하여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⁶⁹⁾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과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즉, 인격권의 침해,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위헌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

68) 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매매춘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메간법(Megan’s Law)으로 알려진 미국의 성범죄자등록법제와 같은 정보공개제도를 참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0. 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같은 해 7. 1 시행).

69) 박선영,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0-115면.

칙, 평등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적법절차원칙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⁰⁾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청소년 성(性)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⁷¹⁾ 헌법 제13조 제1항⁷²⁾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제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제도가

70) 2003. 6. 26 선고 2002 헌가 14 결정.

7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범죄방지 제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 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헌법 제13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에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⁷³⁾⁷⁴⁾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⁷⁵⁾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관한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73)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4-625면.

74) 미국 연방대법원은 알래스카주의 메간법이 성범죄자로 하여금 이미 유죄확정되어 대중에게 개방된 판결자료 중 자신의 신상과 유죄판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위반시 형사처벌), 그 자료를 당국이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를 수치형이나 명예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41-642면.

75)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6-527.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⁷⁶⁾에 위배하여

76)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⁷⁷⁾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일반 범죄들, 예컨대 미성년자 살해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등의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법상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성매수의 장소제공 또는 알선한 자 등 일련의 행위의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

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참조).

77)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5면.

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⁷⁸⁾,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⁷⁹⁾

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해석된다.⁸⁰⁾

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신상공개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¹⁾

78) 오늘날 성매매 등 아동에 대한 성착취 문제는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여러나라에서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한 새로운 입법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바, 1989년 유엔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조약체결국이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바 있고(제34조), 한편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성착취에 대항하는 제1차 세계 대회’에서는 참가국들이 상업적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향후 5년 이내에 개발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직접 관할 당국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명, 주소, 직장, 유죄판결 내용을 등록하게 하며 등록자들은 사진과 지문까지 찍고 그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에 공개되고(알래스카주의 경우), 대만의 경우에도 아동및소년성교역방제조례(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2000. 11. 8. 수정 공포된 것)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가 대가를 받고 아동(12세 미만자)이나 소년(18세 미만자)과 성교 혹은 외설행위, 그 밖에 동법상 아동이나 소년의 성(性)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판결 확정 후 주관기관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판결요지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79)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5-626면.

80)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618.

81)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6면.

마. 적법절차 위배 여부

법 제20조 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는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규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⁸²⁾,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원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⁸³⁾

2.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의 위헌의견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으로 인격권의 침해, 평등원

82)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83)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6-627면.

칙의 위배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⁸⁴⁾

가. 인격권의 침해 여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여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타고난 용모나 재능, 학력, 빈부, 성별 등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인에게까지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하는 기초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함부로 일반에 공개할 경우, 그 개인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측면만이 세상에 크게 부각됨으로써 장차 그가 사회와 접촉·교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84) 헌재 2003. 6. 26 선고 2002 헌가 14 결정.

그러나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볼 것이다.⁸⁵⁾

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든 문제가 있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85) 현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50면.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헌의견을 개진하였다.⁸⁶⁾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범죄방지를 이유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일반 범죄자 및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와 같은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범죄방지의 필요성은 일반 범죄자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헌법상 해명의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가 신상공개되는 것은 일반 범죄자등 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등은 모두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 보호’ 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일반 범죄자등과 청소년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성인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의도만 유일한 차별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86)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7-628면.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신상공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⁸⁷⁾

4.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침례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과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즉,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범죄자등에 비해 청소년 성매수자만을 불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위헌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87)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8-629면.

과 5인의 위헌의견으로 위헌론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이 낫지만, 다수의견인 위헌 문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2절 전자감시(전자발찌)제도의 주요 쟁점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상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자감시 제도 일명, 전자발찌제도이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24시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정보를 활용, 관리하는 최첨단 업무시스템이다.⁸⁸⁾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문제에 대하여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장 즉, 다시말해 헌법적으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었지만, 현재는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였고 더불어 재범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88)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국민의 불안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2008. 9. 1.부터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09. 8. 9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 7. 16. 부터는 살인범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⁸⁹⁾

1. 전자감시제도의 긍정론

먼저 전자감시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검토해보면, 첫째,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하여 수용인원의 점차적인 감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구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 수용 없이도 전자장비를 이용한 밀도있는 감시를 통해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에게 사회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를 촉진하고,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전자감시를 통해서 시설내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폐해, 즉 범죄감염의 위험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단절 등이 배제될 수 있다.

2. 전자감시제도의 부정론

반면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으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⁹⁰⁾ 과

89) 조규범, 「전자감시제도」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2007, 참조.

90) 형사 처분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 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 라 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령 형기를

잉금지의 원칙,⁹¹⁾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⁹²⁾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사례로 살인범죄로 13년간 복역을 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자가 자살을 하여, 전자발찌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⁹³⁾

둘째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3. 전자발찌 관련 판례

가.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08. 12. 17.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17세)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이거 보이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긴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10분가량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벗긴 스타킹을 가지고가 이를 강취하였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될 수 있다.

91)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감박 있고 풀고서 출근한 경우 이를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통제의 우려가 있다.

92)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전자발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93) 서울신문, 「목욕탕도 못가…」 전자발찌 찬 40대男 자살, 2011. 1. 13일자.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또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장래의 성폭력범행을 방지하겠다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데 있어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⁹⁴⁾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흉기인 과도로 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협하여 추행한 것과 더불어 불과 2개월에 사이에 걸쳐 강도, 강도예비, 절도의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더불어 항소심도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있어서 기소 전에 소추요건인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점과, ‘현장추적 싸이렌’이라는 TV 프로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

94)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작명령을 기각하였다.⁹⁵⁾

3. 소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예를 몇 가지 언급하였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 제도 시행이후 2011년 3월 28일까지 범죄자 총1,208명(현재 부작자는 564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는데, 이중 성폭력 등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은 0.4%, 성폭력을 포함해서 다른 범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재범률이 0.9% 밖에 되지 않는 현저히 낮아진 재범률을 보여주어, 전자발찌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강도범죄 전과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무려 27.8%나 되어, 강도죄에 대해서도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강도죄까지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⁹⁶⁾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전자발찌 제도의 시행 후 범죄예방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앞으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심어주는 이 전자발찌제도는 정착이 될 것이다.

95)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9노343, 2009전노8(병합), 판결

96)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는 살인과 성폭력 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도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을 집행하고 다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두 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앞의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우범자 관리의 제도상 문제점

현행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에 의하면, 이는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사자료의 확보’는 예외로 하고 ‘재범방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에 의해,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범자의 생활영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사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합헌적인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국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24개주, 네덜란드, 스페인(마드리드), 뉴질랜드	모든 범죄
프랑스	살인, 성폭력, 폭행치사, 상해, 체포, 감금, 폭발물치사, 방화, 미성년자포르노, 폭력물 제작 등
호주 빅토리아 주	성폭력
한 국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죄

※ 전자감시 방법은 그 집행방법에 따라 이동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의 현재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위치추적(tracking)’ 방식과 거주지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명령받은 대상자가 거주지 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택구금(home detention)’ 방식으로 구분된다. 위의 표는 ‘위치추적(tracking)’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가택구금(home detention)’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위에 제시된 국가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가택구금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기본취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인 우범자 관리제도’는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활동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소극적 정보수집활동은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활동의 일환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정보수집활동이 대상자인 우범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요구하게 되어 법률의 제정으로 귀결하게 된다.

우범자의 기본권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범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권리이다. 여기에서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이 대상자의 사회적 평판(reputation)을 손상시켜서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막는다면 이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이 우범자의 첩보수집 활동과정에서 전과사실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가 노출되는 경우 우범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재사회화, 즉 사회복귀에 지장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평판이라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와 관련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이거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우범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있다. 일단 수집된 경우가 전산처리에 의하여 관리에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우범자는 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자기의 정보에 대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⁹⁷⁾

97) 오병두, 「효율적인 우범자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70-71면 참조.

현행 ‘우범자첩보수집규칙’에 따른 운영에서도 “경찰은 우회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문을 하는 형식으로 단순히 동향을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지 않고,⁹⁸⁾ 종래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와 달리, 현행 ‘우범자첩보수집규칙’ 상으로는 첩보수집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나누고 있으며, 자료보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그들에 대한 최근의 동향이나 교우관계 그리고 접촉인물의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⁹⁹⁾

우범자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¹⁰⁰⁾은 ‘현실적인 우범자 관리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보호관찰 업무가 법무부 예하 보호관찰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경찰은 기본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실상 지원과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업무지원과 협조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의무화하는 대신 우범자화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담당 경찰관의 증원이 절실하다.¹⁰¹⁾

우범자 관리제도는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 혹은 갱생보호와 연속선상에 놓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⁰²⁾ 그렇다면 우범자 관리제도가 ‘재범방지’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교정에서 보호관찰, 갱생보호를 거쳐 우범자 관리제도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이 단계적으로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론상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이념형에 비추어 본다면, 즉 ‘재범

98) 김성문, 앞의 글, 38면; 오병두, 위의 글, 74면.

99) 김성문, 앞의 글, 39면; 오병두, 앞의 글, 74면.

100) 권혜수·김재봉, 앞의 글, 45면.

101) 김성문, 앞의 글, 186면.

102) 이들 제도와 우범자 관리제도와와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권혜수·김재봉, 앞의 글, 25-26면.

방지’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제도를 보는 경우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나아가 우범자에 대해서는 그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설명은 그 문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¹⁰³⁾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의 주체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 담당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출소 통보는 가석방 등의 보호관찰부 처분에만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형기 종료 등을 이유로 한 만기 출소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의 관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임의처분 형식으로 내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우범자 선정 여부를 결정·관리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보호관찰부 석방에 따른 출소자의 신고의무나 정당한 보호를 따라야 하는 법적 수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성의 담보에는 한계가 따른다.”¹⁰⁴⁾

우선, “형기 종료 등을 이유로 한 만기 출소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의 관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출소자에 대해서는 교정의 측면에서 재범방지의 대책은 소극적인 우범자 관리대책만이 존재한다.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은 거의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시행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 “실효성의 담보에는 한계가 따른다.”

‘재범방지’와 ‘수사자료의 확보’ 양자 중 어느 것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예상되는 인권침해의 쟁점과 그 해결책이 달라지게 된다. 우범자 관리제도를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으로 파악하게 되면,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은 일종의 ‘치안정보활동’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제, 그리고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과의 충돌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 점은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달라지는 점이다. 재범

103) 오병두, 앞의 글, 76-77면.

104) 김성문, 앞의 글, 37면.

방지기능을 강조하면 일종의 ‘교정활동’의 연장선에서 파악되며 개인의 신체의 자유, 재사회화를 위한 권리, 인격권 등이 더욱 문제로 된다.

우범자 관리제도가 ‘재범방지’와 ‘수사자료의 확보’라는 상호 분리가 쉽지 않고 체계적 의미가 상이한 요소가 혼합된 제도로 이해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제도적 양자는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실효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법적으로 상이한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상호모순되기까지 하는 요구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⁰⁵⁾

105) 오병두, 앞의 글, 77-78면.

제4장 범죄경력자인 우범자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제1절 우범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형사사법체제하에서 범죄경력자를 사회 내에서 관리할 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기관이 법무부 보호관찰관이라면 경찰이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사회내 관리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이 우범자를 관리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법적 근거 조차 없다는 논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경찰이 범죄경력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경찰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범자 관리를 통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경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 중 한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러기 위해 범죄경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우범자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조치가 없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정보수집활동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범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이나 형사처벌 같은 의무부과가 없으나, 경찰은 우범자를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재범 가

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범자 스스로 재범을 억제토록 하는 등 재범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면담횟수를 조정하여 고위험군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위험군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경찰이 우범자를 만나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¹⁰⁶⁾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필요하다. 2008.2.4.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1.4.16.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가 시행되었다.¹⁰⁷⁾

106) 2010. 4. 2 김소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조직폭력, 마약류 관련 범죄경력에 있는 사람 중 그 성벽(性癖),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관이 우범자의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우범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우범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107) 2010.4.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1.4.16부터 시행되었다. 첫째, 공개 대상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이다.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으로 공개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대상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의 특수 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이다. 셋째,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우편으로 주민에게 송부되며,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 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2년 까지 공개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개정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들에게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10년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의 관련업무도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찰은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범죄경력자를 구별하고, 고위험군의 범죄경력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고·저 위험군의 객관적인 분류를 위해서 대상자에 대해 다음에 언급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다양한 평가요소로 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야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경찰의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찰의 정보수집권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직무범위내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처나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정보수집을 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경찰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¹⁰⁸⁾

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보이용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자로서 실명 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 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108) 강신걸, 「한국경찰의 우범자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2011, 2. 17, 139-140면.

제2절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운영방안

‘우범자첩보수집규칙’ 상 우범자 대하여 자료보관 및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재범 방지 보다는 수사자료의 활용으로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¹⁰⁹⁾

따라서 우범자 관리제도는 기능적으로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 ‘우범자첩보수집규칙’은 이 점에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론상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구성을 기본적 목표로 하면서 ‘현실적인 우범자 관리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¹⁰⁾

우선 ‘이론상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목표와 기능은 재범방지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교정활동과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사회 내 처우’와 연계해서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호관찰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109) 김재봉, 「우범자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199면. 또한 ‘우범자첩보수집규칙’에 따른 경찰활동을 경찰의 ‘수사전 처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이동환, 형사절차상 ‘內査’와 경찰작용상 ‘搜查前 處分’,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84면 이하).

110) 이에 대하여 2010. 6. 4 이한성의원 외 11인이 「성범죄 재범장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범죄의 재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우범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범죄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 중 성벽(性癖)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해제,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 기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성범죄우범자심사위원회를 둔(안 제4조). 라. 경찰청장은 자료보관대상자와 동향관찰대상자의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경찰은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안 제6조).

다음으로 소극적 우범자 관리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자료의 확보가 주된 기능 내지 역할이라면 ‘범죄경력자료’ 등의 내용을 확충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된 자에 대하여 확보되어 있는 각종의 범죄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연계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정보수집 방법에 관한 규정들을 소위 ‘개별적 수권조항’의 형태로 일괄하여 법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해석에 의하여 그 근거규정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¹¹¹⁾

제3절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도구의 도입

현재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면담, 정보수집 활동으로 예방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우범자를 선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적 논란을 일부 해소하고, 수집할 정보의 한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다양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도 법무부에서 KSORAS(Kore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를 개발하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판결전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찰도 ‘성폭력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이라는 연구용

111) 권해수·김재봉, 「효율적인 범죄경력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우범자 관찰보호를 중심으로)」, 치안연구소, 1998, 51면; 오병두, 앞의 글, 79면, 재인용.

역을 통해 KSORAS-SCP(Situational Crime Prevention)를 개발하게 되었고, ‘KSORAS와 KSORAS-SCP를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산출하여 2011년부터 시범사용을 할 예정이다. 이 도구들을 상당기간 운영하면서 재범위험성 평가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경찰만의 독자적인 평가도구 개발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도구 사용으로 기본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 정보수집에 따른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폭력 이외에 재범 위험성이 큰 다른 죄종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도입여부도 재범장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¹¹²⁾

제4절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경찰의 정보수집권이 규정되어도 성폭력 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외에 준수사항 부재, 소재불명자에 대한 강제수사 불가 등으로 실질적인 재범방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관계 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범위험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한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우범자를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논란, 법무부는 형기 종료자에 대한 관리제도의 부재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자 관리 전문가인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주로 하고, 경찰이 협조하는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

112) 강신걸, 앞의 글, 141면.

축하면 국가적인 재범방지활동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형기 종료자의 사회내 관리제도인 전자발찌와 신상 정보 등록제도의 최종이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범률이 높은 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확대하거나, 위험성에 따라 전자발찌보다는 낮은 수준의 감 독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운영되는 살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관련 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하고, 경찰의 살인 우범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만 우범자 관리대상을 한정하여 경찰과 법무부가 통합적인 재범 방지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³⁾

제5절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최근 외국의 범죄자 관리 동향을 살펴보면, ‘고위험범죄자 재범위험성의 중점 관리’라는 관점에서 범죄자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자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¹¹⁴⁾

첫째, 관리대상의 범죄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나 폭력범죄자 등을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하고 고위험범죄자로 지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범죄자의 관리단계를 연계·통합하는 것이다. 즉 양형단계에서 부터 시설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에 이르기까지 범죄자관리의 전과정에

113) 강신걸, 앞의 글, 141-142면.

114) 이하에 대하여는 정진수, 앞의 글, 101-102면을 정리하였다.

걸쳐 연속성있게 범죄자를 관리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이 양형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고,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입소하는 시점부터 출소 후 재범위험성이 없어지게 될 때까지 범죄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 관리는 ‘범죄자관리의 전과정에서 연속성있는 범죄자관리(end-to-end management of offenders)’ 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범죄자의 관리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관리절차에서 교도소·보호관찰소·경찰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범죄자 재범방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자관리체계를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고위험 범죄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 ②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사용하는 문제, ③ 시설 내 관리와 사회내 관리의 각 단계에서 범죄자관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문제, ④ 지역사회에 있는 고위험 범죄경력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기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⑤ 고위험범죄자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처분제도의 정비문제가 검토될 구체적으로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최근 범죄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과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1970년도 형사범 중 전과자 비율이 7.2%였던 반면, 2008년도에 검거된 범죄자는 49.3%가 재범자로 특히, 방화죄는 66.5%, 살인죄는 64.6%, 강도죄는 63.4% 등 강력범죄의 재범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더불어 범죄경력자의 관리강화 및 대책마련에 대하여도 그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죄행위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의 현황과 관리제도의 실태, 그리고 외국의 우범자 관리제도 및 우범자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는 주요쟁점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더불어 우범자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범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으로 범죄경력자인 우범자를 관리 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아니면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범자 관리 업무에 있어 이러한 명시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되어야만 앞서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재범화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즉,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각종 사회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영국은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ystem)와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설치·운영하면서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간의 완벽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범죄자관리와 재범자의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나름대로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방지를 하고 있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수용·관리하면서 재범방지를 하고, 경찰은 우범자를 관리하며, 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재범방지를 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독립적인 운영으로 많은 부분 공조기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범죄경력자에

의해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관리체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형사사법기관 간의 완벽한 공조 시스템이 이루어져 더 이상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기관간의 연계 시스템이 확실히 정비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완벽한 공조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재범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리라 본다.

【 參考文獻 】

I. 國內文獻

- 강신결, 「한국경찰의 우범자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우범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2011, 2. 17.
-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 보관대상자 현황」, 2010. 11. 30.
- 경찰청, 「우범자 중점·첩보·자료보관 대상자의 최종별·관서별 현황」, 2010. 11. 30 기준.
- 경찰청, 「미국의 우범자관리 실태 자료」, 내부자료, 2010.
- 경찰청 형사과, 「우범자 관리대책 개선방안」, 2009. 10. 1.
- 권해수·김재봉, 「효율적인 범죄경력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우범자 관찰보호를 중심으로)」, 치안연구소, 1998.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2009. 12.
- 김성문,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소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2010. 4. 2.
- 김재봉, 「우범자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 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박선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무부, 「보호관찰제도 도입 20년 성과와 미래 비전」, 2009. 8. 31.
- _____, 「재범 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꼼짝마! -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단주 및 알코올 치료 교육, 마약검사 명령 받는다」, 2009. 11. 28, 보도자료.
- _____,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형 확정된 성폭력범에게 소급적용, 살인범도 부착가능」, 2010. 3. 31, 보도자료.
- _____,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2010. 2. 3.
- 오병두, 「효율적인 우범자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 이동환, 「형사절차상 '內査'와 경찰작용상 '搜查前 處分」,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한성,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2010. 6. 4.
-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
- 정상영,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와 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국회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 정신수,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국회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 조규범, 「전자감시제도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2007.
-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 주 호주대사관, 「호주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

자료, 2010. 6. 4.

II. 外國文獻

- Anne-Marie McAlinden, "The Use of 'Shame' with Sexual Offender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5, May 2005.
- Autumn Long, "Sex Offender Law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lawed Systems and Needed Reforms," Transnational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Winter 2009.
- Meghann J. Dugan, "Megan's Law or Sarah's Law?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Notification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23, October, 2001.
- Douglas Thomson, "Manuel, psychopathy and risk assessment",
Scottish Criminal Law 2009.
-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2007.
- Jason Woor · Hazel Kemshall, The operation and experience of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MAPPAs),
Home Office Online Report, 2007.
- Joan Petersilia, "Parole and Prisoner Reentry in the United States,"
Crime and Justice Vol. 26, 1999.
- Ministry of Justice, NOM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TSO (The Stationary Office): London. ; The Observer,

18 November 2007.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Public Protection Unit,
MAPPA Guidance, 2009.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2002.

Ohio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 The Ohio Plan
For Productive Offender Reentry and Recidivism
Reduction, 2002.

Peter Nicholson, "Risky business," Journal of the Law Society
of Scotland, Vol. 53, No. 9, 2008.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01-966T Reintegration
of Offenders Into Communities, 2001.

Ⅲ.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4. 6. 30 선고 92헌바38.

헌재 1998. 5. 28. 96헌바4.

헌재 2003. 6. 26 선고 2002 헌가 14.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 2009전고6(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9노343, 2009전노8(병합), 판결.

IV. 기타

경향신문, 「강도범도 ‘내년부터 전자발찌’ …법개정 추진」, 2011. 1. 20.

법률신문, 「전자발찌 강도범에도 부착」, 2011. 1. 24.

서울신문, 「목욕탕도 못가…» 전자발찌 찬 40대男 자살」, 2011. 1. 13.

서울신문, 「전자발찌 30대, 출소 6개월만에 또 성범죄」, 2011. 6. 19.

연합뉴스,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2011. 1. 24.

조선닷컴,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 개정 추진」, 2011.1.20.

포커스 신문, 「강도범도 전자발찌…재범률 월등히 높고 죄질 나빠」, 2011. 1. 21.

www.suntimes.com, 2011. 5. 20일 방문.

<http://www.lapdonline.org/>, America LAPD homepage, 2011. 5. 30일
방문.

<http://nicic.gov/> 2011. 5. 2 방문.

책임연구보고서 2011-08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 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